

연구용역계약서

(주관연구기관 - 참여기업)

_____(주) 아이피에스 ___(이하 "갑"이라 한다)와 한양대학교(이하 "을"이라 한다.)는 <u>"단원자층 증착 기술개발" (연구책임자 : 전형탁, 공과대학 재료공학부)에 관한 연구</u>(이하 "연구"라 한다)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.

• <u>총연구개발기간 (다년도</u> 협약연구기간) :

2003년 7월 1일 부터 2006년 3월 31일 까지

· 당해연도 연구기간 : 2005년 4월 1일부터 2006년 3월 31일 까지

제1조 (목적)

1 1 41

본 계약의 목적은 별첨 연구계획서의 연구목적과 같다.

제2조 (범위)

본 계약의 범위는 별첨 연구계획서의 연구범위와 같고, (을)이 연구 완료 후 (갑)에게 제공하는 연구결과는 연구목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에 한한다.

제3조 (기간)

총 계약의 기간은 <u>2003</u> 년 <u>7</u> 월 <u>1</u> 일부터 <u>2006</u> 년 <u>3</u> 월 <u>31</u> 일까지 <u>33</u> 개 월로 한다.

제4조 (연구비)

본 연구에 소요되는 총 연구비중 (갑)이 (을)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는 다음과 같다.

구분	1차년도		2차년도		3차년도		계	
기업부담금 (현금)	20,000	천원	20,000	천원	20,000	천원	60,000	천원
기업부담금 (현물)	30,000	천원	80,000	천원	80,000	천원	190,000	천원
계	50,000	천원	100,000	천원	100,000	천원	250,000	천원

① 참여기업의 연구비 출자

(갑)은 연구계약 체결과 동시에 현금부담분 금 이천만원정(₩20,000,000)에 대하여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하고, 현물부담분 금 팔천만원정(₩80,000,000)에 대하여도 현물출자확약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(갑)과 (을)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출자하여야 한다.

② 연구비의 지급

11 11

- (갑)은 본 연구비에 소요되는 연구비 중 현금부담분을 다음과 같이 (을)에게 지급한다.
 - (가) 제 1 차 : 2003년 9월 일 20,000 천원
 - (나) 제 2 차 : 2004년 5월 일 20,000 천원
 - (다) 제 3 차 : 2005년 5월 일 20,000 천원

제5조 (연구보고서 제출)

(을)은 연구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본 연구결과에 관한 최종보고서 <u>1</u>부를 (갑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연구 중간보고서는 양자 합의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.

제6조 (연구결과의 귀속)

본 연구결과(Know-How 및 본 연구결과로 기대되는 특허권 포함)는 연구에 참여한 (갑)과 (을)의 공동소유로 하고 특허출원 및 등록, 유지는 (갑)의 비용으로집행하며, 그 기술에 대하여 (갑)은 우선실시권을 갖는다.

제7조 (기술의 실시)

- ① (갑)은 연구결과 및 산업재산권을 우선적으로 기업화할 권리를 가지며, 연구 결과 중 일부나 전부를 활용하거나 기업화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매출액이 발생으 할 경우 연구에 투입된 정부지원출연금액(산업재산권 출원·등록·유지비용 포함) 및 경상기술료에 대한 특별히 지불하지 않고, 공동 특허 출원 시 특허 출원, 등록, 유지비용을 (갑)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대체한다.
- ② (을)은 타기관에 우선하여 (갑)에게 기술실시에 관한 계약체결을 제안하여야한다.
- ③ (갑)이 1개월 이내에 그러한 제안을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(을)은 타기관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 이때 타기관과의 기술실시 계약조건을 (갑)에게 제시한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. 단, 통상실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.

제8조 (신의성실 및 상호협조)

- ①(신의성실) (갑)과 (을)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- ②(상호협조) (을)은 전 연구과정을 통하여 (갑)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연구내용에 관하여 (갑)과 협의하여야 하며, (갑) 또한 본 연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(을)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③(규정준수) (갑)이 연구수행에 필요한 인력, 재료, 기자재 및 시설등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(을)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9조 (비밀보장)

(갑)과 (을)은 상호 상대방의 승인 없이는 본 연구와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이 조항은 상호 일반적인 기업활동이나 연구활동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.

제10조 (명칭사용)

(갑)은 본 연구로 취득한 정보를 (을)의 사전 서명 승인없이 본 연구의 목적과 무관하게 광고, 판매촉진,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 으며,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(을)의 명칭을 암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11조 (권리양도의 제한)

(갑)과 (을)은 상호 상대방의 동의없이 본 계약에 의하여 취득되는 제반권리를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.

제12조 (계약의 해지)

- ①((갑)의 해지) (을)이 본 연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, (갑)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(을)에게 해지의 의사를 통보하여 협의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②((을)의 해지) (갑)이 본 계약을 위배하여 원활한 연구수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(을)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(갑)에게 이의 개선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현저한 개선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③(해지협의) 본조 제1)항 및 제2)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(을)은 해지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시까지의 연구비 집행정산서 및 해지시까지의 연구보고서를 (갑)에게 제출하고, 연구비의 미집행분에 한하여 (갑)에게 반환한다.
- ④(기타) 기타 해지에 필요한 사항은 (갑0과 (을)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. 제13조 (중재)

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종료 후 본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의 효력, 또는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양자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분쟁은 중재에 의해 해결한 다.

제14조 (계약의 변경)

(갑)과 (을)은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15조 (계약의 효력)

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.

제16조 (해석)

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상 관행에 따르는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다.

본 계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(또는 서명, 간인 포함)하고 주관사업단인 테라급 나노소자 개발사업단이 1부씩 (갑)과 (을)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유 첨 : 연구계획서 1부

2005 년 4월 1일

"갑" "을"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한 양 대 학 교 산학협력단장 : 이 영 무리 (전) 연구책임자 : 전 형 탁